

# 역구매자금 결제제도(판매기업중심) 업무협약서

## (판매기업용)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담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_\_\_\_\_ (이하 "판매기업"이라 합니다)은(는) 판매기업이 재화 및 용역 등을 공급한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본 협약에 \_\_\_\_\_ 년 \_\_\_\_ 월 \_\_\_\_ 일 체결한 기업구매자금 결제제도 이용약관서(판매기업용) (이하 "이용약정"이라 합니다)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판매기업이 은행의 역구매자금결제제도(판매기업중심)를 이용하여 협력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 "협력기업"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한 구매기업중 은행으로부터 본 협약과 관련된 구매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업구매자금 결제제도 이용약관(구매기업용) 및 구매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
- "역구매자금결제제도(판매기업중심)"라 함은 판매기업이 추심의뢰 후 협력기업을 대리하여 인수 및 협력기업명의의 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여 판매대금을 수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인수"라 함은 제시된 기업구매자금어음을 지급할 것을 협력기업이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인터넷뱅킹"이라 함은 하나은행이 운영하는 기업인터넷뱅킹, CMS서비스, FirmBanking 등 전자적인 수단을 말합니다.

### 제 3 조 (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

은행은 협력기업에 대한 구매자금대출의 총 대출한도를 다음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운용하기로 합니다.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v" 표시 합니다)

협력기업에 대한 구매자금대출의 총 대출한도	금 원	
이자율 등	<input type="checkbox"/> 고정금리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연 %
	<input type="checkbox"/> 변동금리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지연배상금율	지연배상금률은 제3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단, 최고지연배상금률은 연 %로 합니다. 연체기간이 (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간이 (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간이 ( )개월 초과인 경우 : 연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제 4 조 (추심의뢰)

판매대금의 추심의뢰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

- 판매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판매대금의 수급 용도로만 추심의뢰할 수 있습니다.
- 판매기업이 전송하는 추심의뢰내역은 건별로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1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 추심의뢰 건별 대출만기일은 추심의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은행휴무일은 대출만기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심의뢰명세는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관리점에 서면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제 5 조 (판매대금의 입금)

은행은 판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추심의뢰 명세를 기초로 하여 협력기업에 대한 구매자금대출 총한도 및 협력기업별 구매자금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협력기업 명의의 대출을 취급하여 이용약관에서 지정한 판매대금입금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동 협력기업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거나 기타 은행의 내규상 여신의 비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산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 6 조 (대위변제 의무)

협력기업이 구매자금대출 상환기일에 개별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 및 협력기업이 허위·작성오류 등의 사유로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이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대출금 상환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계정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 7 조 (한도 감액, 정지)

-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판매기업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3조에서 정한 “협력기업에 대한 구매자금대출의 총 대출한도” 및 본 협약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한도액을 줄이거나 협력기업의 대출취급 등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조달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외환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
    -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 판매기업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 외부신용평가기관 또는 은행 신용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절/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 제 8 조 (손실부담 및 면책)

판매기업이 전술한 추심외의 명세에 의해 협력기업 명의로 자금결제된 건에 대하여, 추심외자료의 허위·작성오류, 기타 사유 등을 이유로 협력기업이 결제자금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로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손해는 판매기업이 부담하기로 하고 은행에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 제 9 조 (자료의 제출)

은행은 협력기업의 구매자금대출의 취급상황 점검 및 한국은행이나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 필요한 경우 거래관련 증빙서류나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기업은 관련자료를 즉시 제출하기로 합니다.

## 제 10 조 (협약서 효력)

-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_\_\_\_\_년 \_\_\_\_월 \_\_\_\_일 까지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 은행 및 판매기업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본 협약에 의해 협력기업에게 대출된 구매자금대출의 상환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이용약정과 상충되는 사항은 본 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이용약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순서로 합니다.

## 제 11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지역본부 또는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제 12 조 (기타 특약사항)

	판매기업	(인)
--	------	-----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은행"과 "판매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  
(인)

주 소 :

[판매기업]

회 사 명 : \_\_\_\_\_  
(인)

주 소 :

“판매기업”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본 협약서 1부를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본 협약을 체결함.	판매기업	(인)
--	------	-----

